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374

발의연월일: 2024. 9. 26

발 의 자:이수진·박홍배·김정호

송옥주 · 추미애 · 이기헌

민형배 · 한정애 · 서영교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스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른바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과 고립·은둔청년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와 같은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년의 주거지원에 관한 규정은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가 자립 및 안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이를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포함시켜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도록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여건 조성 및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주거지원의 법률 근거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청년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가족돌봄청년: 부모가 사망·사고·장애·질병·가출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어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 나. 고립·은둔청년: 사회적·경제적·문화적·심리적 원인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
- 다.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원인으로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 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실태를 별도로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여건 조성 및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	5
교육 •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	
려움을 겪는 <u>청년을</u> 말한다.	<u>다음 각 목</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
	<u>년을</u>
<u><신 설></u>	가. 가족돌봄청년: 부모가 사
	<u>망·사고·장애·질병·가</u>
	출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
	을 상실하거나 부양이 이
	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어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
	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
	지고 있는 청년
<u><신 설></u>	<u>나. 고립·은둔청년: 사회적</u>
	·경제적·문화적·심리적
	원인 등으로 정상적인 사
	회활동과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u>청년</u>
<u><신 설></u>	 <u>다.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u>

6. • 7. (생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 ⑥ (생 략)

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 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 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 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③ (생 략)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생 략)

<신 설>

원인으로 고용・교육・복 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 을 겪는 청년

6. • 7. (현행과 같음)

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 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아 니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

-----. 이 경우 정부는 취약 계층 청년에 대한 실태를 별도 로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청년 주거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 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

거 여건 조성 및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